

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▶ 인지세 미납부 및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계약체결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▶ 인지세 미납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인지세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영수증의 복사본 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

## ■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서	계약체결일	분양대금(총 공급대금)	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
분양권 전매계약서	명의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(분양대금 + 프리미엄)	

## ■ 인지세 납부금액

구분	기재금액	세액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등)	1,000만원~3,000만원	2만원
	3,000만원~5,000만원	3만원
	5,000만원~1억원	7만원
	1억원~10억원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
※ 타입별 분양대금이 상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가산세 개정사항 기간별 최대 300% 부과 ※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, '21. 1. 1부터 적용

구분	납부기간	가산세
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세액 비율	3개월 이내	미납세액의 100% 가산
	3개월 초과~6개월 이내	미납세액의 200% 가산
	6개월 초과	미납세액의 300% 가산

## 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구분	온라인	오프라인
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e-revenuestamp.or.kr)	우체국, 은행
구입방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홈페이지 접속 : 전자수입인지 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</li> <li>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</li> <li>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서비스 클릭 후 구매 선택</li> <li>납부정보 입력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도 : 인지세 납부</li> <li>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등 소유권이전</li> <li>금액 : 150,000원</li> <li>건수 : 1건</li> </ol> </li> <li>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후 출력</li> <li>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(계약 전 복사본 제출)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</li> <li>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도 : 인지세 납부</li> <li>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</li> <li>매수 : 1매</li> <li>성명/주민등록번호/연락처 기재</li> </ol> </li> <li>결제 (현금납부만 가능)</li> <li>전자수입인지 발급</li> <li>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(계약 전 복사본 제출)</li> </ol>
유의사항	<p>▶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셔야 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할 경우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.</p> <p>▶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시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</p>	